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㉓



최 중 규
포천명유회 회장

유인선 호우정리비
(柳仁善 孝友旌閭碑)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4호
· 소재지 : 포천시 자작동
· 건립연대 : 1735년(영조 11년)
· 규모 : 총고 362cm, 비고 196cm, 두께 33cm

포천시 자작동 마을 뒤편에 있다. 효자 유인선의 형제 다섯명은 동거하면서 부모에게 효성이



포천시 자작동에 위치한 유인선 호우정리비.

지극하였고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해서 나라에서 호우정문을 내렸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비를 세웠다. 앞면은 이직현이撰写하고 김상욱이 글씨를 썼으며 뒷면에는 양산언이 撰하고 글씨도 썼다. 그런데 비석에 초서로 글씨를 쓴 것은 보기드문 일이며 문지원이 호자를 썼다. 비문은 편지상 번역문을 게재한다.



포천시 어룡동에 위치한 효자오백주정문.

효자오백주정문
(孝子 吳伯周 旌門)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3호
· 소재지 : 포천시 어룡동
· 건립연대 1721년(경종 1년)
· 규모 : 비고 123cm, 폭 58cm, 두께 21.5cm

포천시 어룡동에 있다. 오백주는 부친 병환을 고치기 위해 축석령에 기도하고 산삼과 석밀을 구하여 부친병을 고쳐 나라에서 효자 정문을 내렸다. 이 문에는 오백주의 증손 오수보 부부의 효열정문이 함께 있으며, 오룡량의 처 문화유씨 열녀정문도 이 곳에 있다.

자·유·기·고



조 돈 범
포천시사립협회 회장

쌀과 농업의 감성을 부활하자

자식이 아니기에 농촌에 대해 무감각하다. 따라서 이러한 감성의 코드는 거의가 있을 것이다.

최근 쌀개방 문제로 시위중 모습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물론 언론과 국민의 관심은 싸늘하기만 하다. 우리나라의 농촌인구는 2004년 말 현재 341만명으로 10년전에 비해 200만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게다가 농가의 평균연령이 57세로 노령화 되어 있어 농촌에서 젊은이들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 포천의 농가인구도 2003년 말 현재 전체인구 15만8천명 가운데 20%에 못 미치는 약3만 명이던 전체 유입인구는 증가추세이나 농가인구는 거꾸로 감소하고 있다.

농촌인구가 전체국민의 10%에 못 미치고 주된 여론 주도층이 20,30대 인접을 감안하며 이같은 냉담함이 그리 놀랄일도 아니다. 무관심의 배경은 경쟁과 개방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고 세계화는 대세라는 경제논리가 철저하게 사회전반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물론 경쟁력있는 반도체와 현대자동차를 외국에 팔아먹는 국가가 창출되고 국민의 생활도 나아지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생

명과도 같은 농업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못난자식은 버리고 잘난 자식만 취하겠다는 생각과 별반 다를게 없다.

산업보존정책을 통해 성장하였음에도 예전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줄 모른 채 후진국들에게 개방을 강요하는 이른바 사다리 건너차기를 감행하고 있는 선진국들조차도 농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 문화, 관광적인 장점을 인식하여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농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정부에서도 향후 100조가 넘는 지원을 하고 직불제를 통해 쌀값을 보존해 주는 등의 많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서비스산업과 결합한 산업융·복합을 비롯해 학교급식의 국산농산물 의무화 등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각론의 목소리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농민들은 정부의 정책과 대안에 별반 관심이 없다.

오랜 경험을 통해 우리사회가 농업경쟁력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으며 이로 인해 오로지 자신들의 노후와 형편을 고려 각자의 활로를 눈물겹게 모색하고 있을 따름이다.

향후 쌀개방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구조조정은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국민의

무관심이 지금과 같이 계속된다면 농업의 회생은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희망이다"라는 농민의 절규를 곱씹어 봐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만으로는 농업을 살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당위의 문제에 근접할 수 없을 것이다.

편중된 산업만을 바탕으로 한 발전은 사회 불균형과 부의 편차를 가속화하여 결국 다양성을 토대로 한 건강한 사회구성원간의 연대를 만들어 갈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농업을 살리는 일은 농업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일이다. 국민 모두가 우리를 양식과 생명의 원천으로 농업을 생각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업의 문제를 우리문제로 생각하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필요하다.

우리모두의 근원을 따져보면 누구나 농군의 자식이다.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농업이 시작되었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과 휴과 향수를 제공하고 있는 농촌에 등을 돌리는 일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다. 나는 오늘도 농군의 자식이라는 냉정한 감성의 부활을 꿈꾼다.

특집 기획 ●●●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로 독립수사권 확보

수사경찰은 그 수사의 개시와 진행을 그들의 고유권한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즉 지금까지 경찰은 1차 수사권이든 어떤 형태의 수사권이든 법적으로 인정된 권한이 아닌 관례상의 형태에 의존해 오히려 마치 경찰수사 자체가 불법으로 행해온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독자성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서의 수사과와 대공수사분야의 경찰 일부에만 수사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여타 기능의 수행에는 전혀 지장을 주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시에는 국민의 인권보장강화에 지장을 초래하며 부조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즉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전 수사과정을 지휘·감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만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되면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 등이 자행될 위험이 있으며, 각종 사건의 부당처리 및 지연, 불법구금, 사건의 암장 등 불법·부당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장치가 없어 국민의 인권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경찰이 검사의 지휘·감독 하에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박종환군 사건, 성고문 사건 등 다수의 고문사건이 발생하였고, 각종 비위로 처벌되는 경찰관이 속출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이 높은 현실을 보면 경찰의 수사지휘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막대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조직으로서 정보·보안·외사·대공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강력한 중앙집권적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기에 수사의 주도적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경찰국가화의 길을 걸을 위험성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경찰수사권이 독립되어 검사로부터 지휘를 받지 않으면 경찰의 방대한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이 결합되어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하게 되어 그때에는 어느 누구도 경찰을 견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수사권의 비대화는 국가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오게 되며, 더욱이 경찰에 수사권을 주게 되면 정치적 성격과 권력과의 타협성 때문에 권력형 범죄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되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도 역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검사의 수사지휘·감독권은 검사와 사법경찰관과의 관계이지 검찰청과 경찰청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감독권을 기관 대 기관간의 권한분제로 비화하여 마치 경찰청이 검찰청에 예속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조직상의 명칭이 아니라 사법경찰직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른 기능상의 개념이고, 또 검사의 수사지휘·감독권은 수사과정과 관련된 권한이므로 수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관을 사법경찰관리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 현실적으로도 수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관, 예컨대 경비·과장을 검사 지휘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아마도 경찰에서는 경무관 이하 직원이 수사업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검사의 지휘권 아래 놓여 있다고 보는데서 검사의 수사지휘·감독권을 기관 대 기관의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지휘·감독권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개별적 문제가 아니라 이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찰의 수사권독립론을 반대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첫째로 수사절차는 철저히 법적으로 규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으로 무장된 검사가 그것을 주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경찰 행정자치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또 본래의 업무가 보안, 행정경찰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으며 신분에 있어서도 안



노 영 민
포천경찰서

정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관과 거의 대등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주재토록 하는 것이 정치적 영향이나 이에 좌우될 위험이 적다는 것이다.

셋째로 경찰은 지난날의 경찰 검사의 수사지휘·감독권은 수사과정과 관련된 권한이므로 수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관을 사법경찰관리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 현실적으로도 수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관, 예컨대 경비·과장을 검사 지휘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아마도 경찰에서는 경무관 이하 직원이 수사업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검사의 지휘권 아래 놓여 있다고 보는데서 검사의 수사지휘·감독권을 기관 대 기관의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지휘·감독권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개별적 문제가 아니라 이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첫째 근거에 관해서는 수사가 법적으로 넓게 규제 받지 않았던 지난날의 국가권위주의시대에도 검사가 수사의 전담권을 가졌다는 것과 반드시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처럼 수사절차가 법의 적정절차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경찰의 독립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근거는 아니라고 본다. 수사단계에서 법률지식은 그렇게 치밀한 이론을 갖출 필요가 없고, 수사활동을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다. 치밀한 법률적용은 공소제기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인 검사에게 맡기면 되고, 또 위의 공판정에서 법관의 소송지휘아래 법률전문가인 검사와 변호인의 법적 투쟁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경찰의 법률지식의 부족이라는 이유는 그의 수사의 독자성 인정에 장애로 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근거에 관해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신분상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타당하다.

(다음호에 계속)

“고객은 가슴으로, 안전은 지식으로”

산업재해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1 어떤 사고를 신고하나?
- 사망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 2 언제 신고하여야 하나?
- 산재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 3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나?
-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사무소에 제출하거나
- 산재보상을 위한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가지중 한가지만 하면 됨)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면 됩니다.



- 자진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종전의 년 1회에서 금년부터 년 4회로 늘렸습니다.
- 자진신고기간은 매분기 마지막 달 (3월, 6월, 9월, 12월)의 1일~7일 사이입니다.
- 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면, 미신고로 인한 사법처리가 유보됩니다.